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69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대체품 개발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미비한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함에 관리 수준 하향 조정**

* 바퀴가 달린 보드에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제품

** 「전안법」 시행규칙 예고고시('24.1.11.~2.20.) 완료

2. 주요 내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現 공급자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에 의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455, yekim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5
- 이메일 : yekim79@korea.kr